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1274
-----------	------

2023. 12. 18.
주택공간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3. 10. 16. 이봉준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2023. 10. 23.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21회 정례회 제4차 주택공간위원회 (2023. 12. 18. 상정·의결)

II. 제안설명 요지 (이봉준 의원)

1. 제안이유

- 2022년 11월 30일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 안전망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이에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방·세탁실 등 공용시설 등이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고시원 운영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업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규정함(안 제5조)
- 마. 안심 고시원 인증의 취득 지원, 유효 기간, 취소를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바. 안심 고시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시정명령을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Ⅲ. 검토보고 요지 (오정균 수석전문위원)

가. 제안경위

- 이 제정조례안은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고시원 거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2023년 10월 16일 이봉준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서울시는 2022년 11월 30일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침수·화재·위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주택’의 공급계획(2026년까지 16,400호)과 안심고시원 인증제도 도입계획을 대외 발표하였음.

- 이후 금년 8월에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 도입을 위한 추진계획¹⁾을 수립하여 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는데, 이 제정조례안은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 이 조례안은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심 고시원의 개념과 시장의 책무, 안심 고시원의 인증에 관한 사항, 안심 고시원 사후 관리방안 등으로 구성됨.

조항	주요내용
제1조(목적)	• 서울시 내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거주민들의 거주성 제고
제2조(정의)	• 고시원, 안심 고시원 인증, 안심 고시원, 운영자 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에 대한 안심 고시원 제도의 체계적 운영 노력 의무 규정
제4조(사업 대상)	• 인증 대상을 서울시에 소재한 고시원으로 규정
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 절차 및 인증 취득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와 인증 취소 요건 규정
제6조(인증 취득 지원)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8조(인증의 취소)	
제9조(안전조치 등)	• 시장, 구청장의 안심 고시원 지도·점검 및 기준 미준수 고시원에 대한 시정명령 등 근거 규정
제10조(시정명령)	
제11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제정 근거 명시

다. 주요 조문별 검토

(1) 안심 고시원 관련 개념 및 시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1) 주택정책실, 「안심고시원 인증제 추진계획」, 건축기획과-18729, 2023.8.29.

-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이 조례의 제정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먼저 안 제2조제1호에서는 ‘고시원’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4호거목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²⁾로 정의(안 제2조제1호)하고,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고시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하고 있음.
- 이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도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기존 노후 고시원 및 신축 고시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조례 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 사료됨.

(2) 안심 고시원 인증 대상 및 인증 절차 등 (안 제4조~제7조)

- 이 조례안은 안심 고시원 인증 대상을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시원으로 한정(안 제4조)하면서, 인증을 받은 고시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3항),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안 제5조제2항)하였음.

- 이 조례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고시원 운영자³⁾는 허가권자⁴⁾에게 인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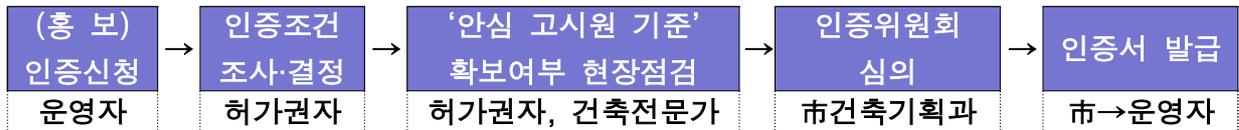
2)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영자”란 고시원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함.(안 제2조제4호)

4) 시장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등

신청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해당 고시원의 용도와 규모 등 기초사항에 대한 인증조건을 확인한 후, 자체적으로 마련한 ‘(가칭)인증기준⁵⁾’을 토대로 건축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서울시에 설치된 ‘(가칭)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⁶⁾).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안)>



(출처: 「안심고시원 인증제 추진계획」 (건축기획과-18729, 2023.8.))

- 안심 고시원 인증절차 중 ‘(가칭)인증 위원회’의 심의는 인증을 신청한 고시원에 대하여 건축기준, 주거환경, 재난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실효성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이나,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 등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하므로⁷⁾, 위원

은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건축법」 제1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5) <안심 고시원 주요 인증 기준(안)>

- 안전시설 : 소화기·스프링클러 설치, 피난통로 등 피난대책 확보 등
- 주거환경 : 실별 면적 7㎡ 이상 확보, 창문 설치 여부 등
- 공용시설 : 세탁실, 휴게실, 공유주방 등 거주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

6) 주택정책실, 「안심고시원 인증제 추진계획」, 건축기획과-18729, 2023.8.29.

7)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3. 존속 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은 위원회 설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신설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음.

-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되, 새로운 위원회의 신설 대신 현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위원회의 심의가 고시원의 안전성 및 주거환경의 쾌적성 등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이러한 심의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가칭)인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정안	수정안
<p>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에 대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시원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조례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u>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u></p> <p><u>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u></p> <p><u>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u></p> <p><u>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u></p> <p><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시원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 안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안 제6조),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에 재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재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조).

- 안 제6조(인증 취득 지원)에서는 안심 고시원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안심 고시원 인증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또는 안심 고시원으로 선정된 이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지원가능한 것인지 등 비용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조문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 이에 대해 집행기관은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자금, 냉·난방 비용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개선과 안전관리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바, 조문 수정 시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제정안	수정안
제6조(인증 취득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이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 비용 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난방 비용 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검토보고서 붙임1. 참고)에서는 이 조례안에 따른 고시원에 대하여 고시원업⁸⁾ 및 숙박시설⁹⁾을 ‘주거안전 취약거처’¹⁰⁾로 정의하고, 시장으로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을 말함.

9)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0)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함(「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하여금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¹¹⁾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주거안전 취약거처 등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¹²⁾을 두고 있는 바, 이 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기존 조례와의 상충 및 중복 가능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이 제정조례안의 경우 그 적용 대상이 고시원에 국한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3) 안심 고시원의 사후 관리 등 (안 제8조~제10조)

-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안심 고시원 인증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등 시장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와 요건을 규정(안 제8조)하고, 안심 고시원에 대한 시장 및 구청장의 지도·점검 및 이를 위한 운영자의 협조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
- 집행기관은 향후 일정한 주기로 건축전문가와 협업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 바,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을 받은 고

11)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함(「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12)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관리
 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
 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시원이 인증사항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토록 함에 있어 필요한 조문이라 사료됨.

<안심 고시원 모니터링 절차(안)>



(출처: 「안심고시원 인증제 추진계획」(건축기획과-18729, 2023.8.))

- 안 제10조에서는 안심 고시원이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이 인증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시정명령’은 해당 안심 고시원이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 이를 회복토록 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이해됨.
- 그러나 행정법상 시정명령은 통상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는 ‘하명’의 일종¹³⁾이자, 이행강제금 부과와 전제가 되는 침익적 행정행위로서 그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야 하는 「건축법」상 시정명령¹⁴⁾과 동일한 용어로 받아들여져 운용과정 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 권고’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라.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협소한 거주공간 및 화재 취약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

1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현황과 법적 과제」(김지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65집 (2019.4) 55~85)

14) 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정명령 이행확보 수단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회수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와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그 요건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3.30. 선고 98헌가8)

악한 고시원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인증과 함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따라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에 대한 리모델링 등의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 안심 고시원 확충을 통한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현행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상 고시원 등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원방안이 포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존 조례와의 관계 설정이 필요하겠으며,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상 관련 위원회의 설치근거 마련 등 일부 조문 보완 및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 신설)
- 안심 고시원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안 제6조 제목 중 “인증 취득 지원”을 “비용 지원”으로 하고, 비용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안 제10조 제목 및 본문 중 “시정명령”을 “시정 권고”로 수정함

VI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74
----------	------------

제안일자 : 2023. 12. 18.

제안자 : 주택공간위원장

1. 수정이유

- 안심 고시원 인증 절차상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고시원의 대상과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내용

-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안 제5조제2항 신설)하고, 안심 고시원의 지원 범위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6조)하며, “시정명령”을 “시정 권고”로 수정함(안 제10조)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 비용
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난방 비용

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0조의 제목“(시정명령)”을“(시정 권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정명령 및”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생략) <u><신 설></u></p>	<p>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현행과 같음) <u>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u> <u>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u> <u>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u> <u>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②·③ (생략)</u></p>	<p><u>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p>
<p><u>제6조(인증 취득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이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신 설></u></p>	<p><u>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u>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u></p>

<신 설>

<신 설>

제10조(시정명령) 시장 및 관할 구청장은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안심 고시원에 대하여 그 운영자에게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용

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난방 비용

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10조(시정 권고) -----

----- 시
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
-----.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심 고시원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시원”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제4호거목에 해당하는 다중생활시설을 말한다.
2. “안심 고시원 인증”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안심 고시원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 고시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심 고시원”이란 제2호에 따라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고시원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고시원 영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고시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대상) 안심 고시원 인증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시원으로

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고시원으로 한다.

제5조(안심 고시원 인증)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고시원에 대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심 고시원 인증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

1. 안심 고시원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
2. 인증을 받은 고시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증 대상의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절차 및 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시원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시장은 안심 고시원 인증을 받은 고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안심 고시원에 대한 건축개조 비용
2. 안심 고시원에 대한 냉·난방 비용
3. 그 밖에 안심 고시원 시설 개선과 안전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7조(인증의 유효 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 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 기간 만료 이전 60일 이내에 해당 고시원에 대한 재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제2호에 따른 절차를 통해 재인증

할 수 있다.

제8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고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심 고시원 인증 후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4. 관외로 이전한 경우

② 시장은 안심 고시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전 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①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은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안심 고시원의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 권고) 시장 및 관할 구청장은 인증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안심 고시원에 대하여 그 운영자에게 인증 기준을 준수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